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44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4. 21.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561,473,280원(가산세 110,273,280원 포함), 지방교육세 70,684,990원(가산세 3,004,9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1,780,830원(가산세 500,830원 포함) 등 합계 643,939,100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당세액 합계 316,07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561,473,280원(가산세 110,273,280원 포함), 지방교육세 70,684,990원(가산세 3,004,9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1,780,830원(가산세 500,830원 포함) 등 합계 643,939,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도로, 공항, 철도, 하천 등의 기술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1994. 9. 29. 설립된 법인으로 [redacted]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7. 4. 19.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회사의 사무소가 있던 [redacted]구 D건물, 8층에 원고의 지점(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2016. 1. 19. E공사로부터 [redacted]구 F 일원 대지 1,5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2. 잔금 지급으로 사실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취득세 신고 및 일부 납부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2억 8,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 8%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지식산업센터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1,200,000원, 지방교육세 67,68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280,000원 등 합계 530,16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7. 3. 1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59,44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라. 징수처분

피고는 2017. 9. 10. 원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음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분인 취득세 등 합계 285,420,090원(가산세 포함)을 징수고지하였고, 원고는 2017. 10. 10. 위 취득세 등 차액 합계 285,420,090원을 납부하였다.

마. 추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피고는 2018. 7. 10.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식산업센터 설립 감면규정에 따라 50% 경감되었던 취득세 561,473,280원(중과세율 8% 적용, 가산세 110,273,280원 포함), 지방교육세 70,684,990원(가산세 3,004,9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1,780,830원(가산세 500,830원 포함) 등 합계 643,939,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18.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의한 감면율(50%) 적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7. 2. 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대도시 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감면율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산업센터 신축 · 증축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지식산업센터 신축 · 증축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착공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착공에 이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조세 감면에 관한 요건은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1. 19.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준비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지식산업센터 신축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건축연면적 14,000㎡ 상당의 규모로 10회에 걸친 디자인 리뷰, 건축심의 접수, 굴토심의 접수, 건축인허가 접수 등을 거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17. 11. 17.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이 내려졌다. ③ E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관한 공모지침에는 '잔금 납부일인 2017. 1. 12.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원고는 2017. 12. 4.경 E공사에 공사 착공일자 연장요청을 하여 2017. 12. 6. E공사로부터 착공일자를 당초 "2018. 1. 11."에서 "2019. 1. 11."로 연장받게 되었고 2019. 1. 9.경 비로소 착공에 들어갔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옥 건립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의한 감면율 50% 적용으로 감경된 취득세를 추징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공사의 미래형 업무용지 사업계획서 공모 시점은 2015. 7.경으로 위 공모에 관한 지침서에는 위치, 면적, 용적률 등이 특정되어 있고 원고도 위 지침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2016. 1. 19.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 2017. 1. 12.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업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미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착공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원고의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옥 공사에 관한 기본계획안 작성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7. 1. 12.부터 9개월이나 지난 2017. 9.경 완성되었고 이후 2018. 4.경 건축실시설계, 2018. 6.경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각 완료되었으며 2018. 12.경 비로소 시공사가 선정되었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2017. 10. 24.자 건축심의 접수에 대하여 통상적인 처리기간보다 단축된 51일 만인 2017. 12. 14. 건축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원고의 2017. 11. 9.자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연 없이 2017. 11. 15. 승인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착공일자를 연장받아 2019. 1. 9.경 비로소 착공에 이르렀는바, 이는 기본계획안, 건축실시설계안, 인테리어설계안, 시공사 선정 등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E공사가 원고의 요청으로 착공일자를 1년 연장해 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각 규정 문언의 내용과 취지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10,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5년의 중과세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시점이 되는 종전 사무소 등의 설치일은 그 실제 설치일로 봄이 타당한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등록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 시행된 2014. 1. 1.을 기준으로 위 중과세기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한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2007. 4. 19. 원고의 이 사건 지점 설치 · 운영 개시 후 중과세 적용기준과 관련한 사무소 등의 범위가 2014. 1. 1.부터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이후 원고가 위 지점 실제 설치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1. 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점 역시 위 등록대상 사업장인 사무소에 해당한다.

(2)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5년의 중과세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무소 등의 실제 설립 · 설치 · 전입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문리해석과 관련 규정과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더욱 부합하고, 등록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위 기준시점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인 2014. 1. 1.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상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 지방세법 부칙(2016. 12. 27. 제14475호)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6. 12. 30. 제27710호) 제6조 역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가중요건(중과세율)과 관련한 5년의 중과세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역시 포함하여 실제 설치일로 해석 ·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는 이 사건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은 [별지1] 기재 합계 316,079,130원인바, 이를 초과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는 나머지 세액, 즉 원고가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별지1] 목록

(단위: 원)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취득세	225,600,000	45,120,000	10,016,640	280,736,640
농어촌특별세	111,280,000	-	500,830	11,780,830
지방교육세	22,560,000	-	1,001,660	23,561,660
정당세액				316,079,130

.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 부칙(2016. 12. 27. 제144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6. 12. 30. 제277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2010. 12. 23. 제1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납세의무구가 성립한 지방세의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7

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6. 12. 27. 제14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57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